

서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3조의 규정에”를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2조중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점용료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표

구 분	산 정 방 법
1. 전기통신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	1.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때에는 500원, H주인때에는 800원, 철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2.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3. 공고탑, 광고판과 이들에 유사한 물건의 설치를 위한 점용	3.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광고막류등 점용면적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표시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구 분	산 정 방 법
4.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목적치장, 휴게소 및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4.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들의 진출입시설을 위한 공동점용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5.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6. 지하도, 지하실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6.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존주택에 부설된 지하실로서 당해 지하실의 설치후 도로의 지하로된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7. 전 각호에 제기된 것 이외에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	7.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주택인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지하도등에 첨가된 물건인 경우에는 점용면적 또는 표시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 고

- 가. 제3호의 점용에는 일시적인 광고막류, 아취식 공작물 또는 노상입간판류등을 위한 도로의 점용이 포함된다.
- 나. 제7호의 점용에는 노점, 지하상점, 각종 공작물, 건축물, 육교 및 식물재배를 위한 도로의 점용이 포함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건물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⑤ “(생략)” “(신설)”</p>	<p>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 2(점용료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별 표)

(점 용 료 산 정 기 준)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산 정 방 법	구 분	산 정 방 법
1. 전기 통신신 설비 및 선 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 물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때에는 720원, H주인때에는 1,200원, 철탑인 때에는 점 용 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1. “(현행과 같 음)”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때에는 500원, H주인때에는 800 원, 철탑인 때에는 1,000 원으로 하며 지하의 경우 에는 점용 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 하수 도관 개스관 과이들에 유 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 면적에 인근 토지가 격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현행과 같 음)”	점용 면적에 인근 토지가 격의 100분의 3를 곱하여 산정한다.
3. 광고탑, 광 고판 해가림 시설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표시면적에 인근 토지가 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가림시 설의 경우에는 점용면적 에 돌출 50cm이상은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3. 광고탑, 공 고판과 이들에 유사한 물건의 설치를 위한 점 용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 격의 100분의 10을 곱하 여 산정한다. 다만, 일시 적인 광고막류등 점용면 적의 산정이 곤란할 경우 에는 표시면적에 인근 토 지가격의 100분의 3을 곱 하여 산정한다.
4. 주유소, 주 차장, 자동 차 정 유 장, 자동차 수리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 격의 100분의 10을 곱하 여 산정한다.	4. “(현행과 같 음)”	점용 면적에 인근 토지 가격의 100분의 10을 곱 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들 진출입 시설을 위한

현행		개정안	
구분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및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공동점용의 경우는 점용 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철도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 지하도, 지하실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기존 주택에 부설된 지하실로서 당해 지하실의 설치후 도로의 지하실로된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	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전 각호의 계기된 것 이외에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 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주택인 경우에는 점용 면적이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지하도 등에 첨가된 물건인 경우에는 점용 면적 또는 표시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7. “(현행과 같음)”	점용 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주택인 경우에는 점용 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지하도 등에 첨가된 물건인 경우에는 점용 면적 또는 표시 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다.